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59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이기현 · 김종민
김현정 · 한정애 · 김문수
조계원 · 김성환 · 이병진
박홍배 · 차지호 · 이정문
부승찬 · 안도걸 · 서미화
복기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재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축·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에 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제5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축·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에서의 총 전력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신축·증축 또는 개축된 건</u> <u>축물에 대한 「신에너지 및</u>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u> <u>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u> <u>재생에너지 사용 실적</u>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 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제50조(경영지침) ① ----- ----- ----- ----- -----

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 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 ----- -----. 1.·2. (현행과 같음) 3. <u>신축·증축 또는 개축된 건 축물에서의 총 전력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 표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② (생 략)	